제 2023110822 호

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

1. 연 구 소 명: (주)넥스톤 기업부설연구소

[소속기업명: (주)넥스톤]

2. 소 재 지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3-14

712호, 713호 (가산동, 가산한화비즈메트로2차)

3. 신고 연월일: 2023년 02월 13일

※ 유효기간: 2025년 1월 3일(소기업 인정요건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.



2023년 2월 17일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

**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되었으며 "https://www.rnd.or.kr"에서 "문서번호"를 입력하면 원본대조 및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.

AO IONE ROCTA ROCTA ROCTA ROCTA ROCTA ROCTA ROCTA ROCTA